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6. 2. 3.(화) ~ 2. 11.(수)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6. 2. 3.(화) ~ 2. 11.(수)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동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5
------------------------------------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7
(도시재생과)

-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1
(공동주택과)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53
(보건행정과)

총무위원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9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체계 구축, 재난대응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높은 정책성과를 달성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335명 → 1,347명 (+12)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335명 → 1,347명 (+12)
 - (일반직) 6급 이하 1,251명 → 1,263명 (+12)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35명”을 “1,3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03명”을 “1,31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4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42	-				
	2급	1	1				
	4급	9	7	1	1		
	5급	69	38	2	8	1	20
	6급 이하 계	1,263	-				
별정직 계		4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 <u>1,335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347명</u> ----- -----.
1. 집 행 기 관 : <u>1,303명</u>	1. ----- <u>1,315명</u>
2. · 3. (생 력)	2.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직급별 정원) 및 별표3

나. 비용발생 요인

6급이하 1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 기준액 적용

나. 추계 결과

6급이하 12명 증원에 따라 연간('26년) 총 137,264,59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된다. ※ 신규인력 총원기간을 고려 3개월분 인건비 소요액 반영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보조 및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137,265	562,236	575,729	589,547	603,696	2,468,473
재원 조달		137,265	562,236	575,729	589,547	603,696	2,468,473
의 재 원	소 계	41,250	41,250				82,500
	보조금	41,250	41,250				82,500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 체 수 입	소 계	96,015	520,986	575,729	589,547	603,696	2,385,973
	지방세	96,015	520,986	575,729	589,547	603,696	2,385,973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률 : 최근 5년 공무원급여 평균 인상률(2.4%) 적용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회 도 시 위 원 회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10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월2동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저층주거지로, 노후 기반시설 및 환경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환경이며,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23. 6.: 사업 최종 선정
- 2024. 2.: 정비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12.: 행복마을 가꿈사업 주민설명회
- 2025. 2.~4.: 행복마을 가꿈사업 워크숍 1, 2, 3차
- 2025. 5.~7.: TF회의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
정비의제 발굴
- 2025. 8.: 정비계획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5. 10.: TF회의 및 주민 설명[변경안 확정(주차장→쉼터)]
- 2025. 11.: 관계부서 협의(변경안)
- 2025. 12.: 정비계획 변경안 (재)주민공람

□ 주요내용

○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 사업명: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 사업면적: 18,295m²
- 사업기간: 2023~2026년
- 총사업비: 33억원(시비 30억원, 구비 3억원)

○ 재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율(%)	비고
인천시	3,000	91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남동구	300	9	
총 사업비	3,300	100	

○ 사업내용

분야	단위사업	사업내용	추진시기
1 안전한 용천마을	1-1 보행 안전 강화	■ 안전횀스 설치 (핸드레일 2개소)	2026년
	1-2 안전통학 가로 조성	■ 통학가로 바닥 정비	
	1-3 안전을 위한 도로속도 저감	■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재정비	
	1-4 교차로 안전 강화	■ 교차로에 도로 반사경 설치	
2 평안한 용천마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 쉼터 조성 (3개소) - 쉼터1 : 문화마당 - 쉼터2 : 이음마당 - 쉼터3 : 골목마당	2026년
3 상쾌한 용천마을	3-1 마을 인프라 정비	■ 빗물받이 뚜껑교체, 추락방지맨홀 설치	2026년
		■ 노후한 가로 인프라 정비 - 도로재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	2026년

○ 향후계획

- 2026. 1.: 기반시설용지 협의매수
- 2026. 4.: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천시)
- 2026. 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참고사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첨부1]

■ 첨부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18,295	18,295	

3.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남동구청장
	주민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295.0	-	18,295.0	100.0	100.0	-
용도지구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8,295.0	-	18,295.0	100.0	100.0	-
	주택용지	11,951.1	감)441.9	11,509.2	65.3	62.9	-
	종교용지	394.5	-	394.5	2.2	2.2	-
	도로	소계	-	5,949.4	32.5	32.5	-
		도시계획시설	-	4,830.9	26.4	26.4	-
		현황도로	-	1,118.5	6.1	6.1	-
	CEPT	-	증)441.9	441.9	-	2.4	-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2	8	국지도로	121	소로2-110	소로2-117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73호 (1981.3.13.)	
기정	소로	2	113	8	국지도로	53	소로2-117	소로2-3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14	8	국지도로	281(103)	중로2-24	소로2-28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17	8	국지도로	186	소로1-30	소로2-1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19	8	국지도로	109(51)	대로2-31	소로2-1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24	8	국지도로	354.45	소로1-8	소로2-22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04	6	국지도로	94	소로2-112	소로2-114	일반도로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해당사항 없음)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분야	단위사업	사업내용	추진시기
1 안전한 용천마을	1-1 보행 안전 강화	▪ 안전웬스 설치 (핸드레일 2개소)	2026년
	1-2 안전통학 가로 조성	▪ 통학가로 바닥 정비	
	1-3 안전을 위한 도로속도 저감	▪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재정비	
	1-4 교차로 안전 강화	▪ 교차로에 도로 반사경 설치	
2 평안한 용천마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	▪ 쉼터 조성 (3개소) - 쉼터1 : 문화마당 - 쉼터2 : 이음마당 - 쉼터3 : 골목마당	2026년
3 상쾌한 용천마을	3-1 마을 인프라 정비	▪ 빗물받이 뚜껑교체, 추락방지맨홀 설치	2026년
		▪ 노후한 가로 인프라 정비 - 도로재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	2026년

※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에 따름

6.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대부분 준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쉽터 설치 부지 제외)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18,295.0	64	61	-	-	3 (쉽터)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규모(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상의 규정을 따름

구분	내 용	비고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관련규정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름	
높 이	-	
건축선	-	

8.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9.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도시경관	• 건축물, 담장의 재료·색채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마을 주요골목, 교차로 환경정비 및 주민자치회 자율관리를 유도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
환경보전	• 쉽터내 수목 식재 등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태양광시설 설치, LED 조명 사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재난방지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및 핸드레일 설치, 도로 재포장, 과속방지턱 재정비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

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를 따르며, 조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을 따름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200m 이내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도]



12.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 내용
영역성 강화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명료성 강화	• 도로 바닥 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문양포장 등) • 핸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로 각종 위험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 범죄예방시설(반사경 등) 집중 설치 및 도로 조도 확보를 통해 안심통행로로 이용

• 범죄예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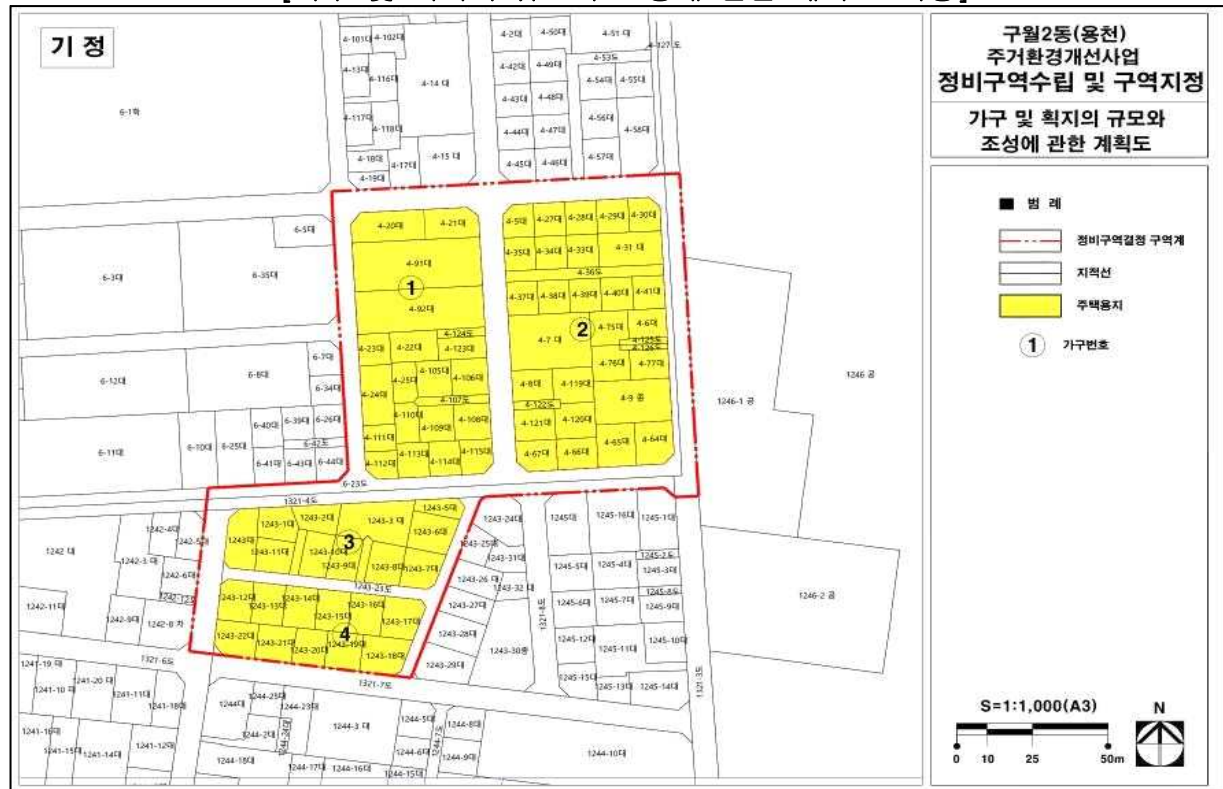


행복마을 주민자치회 범죄예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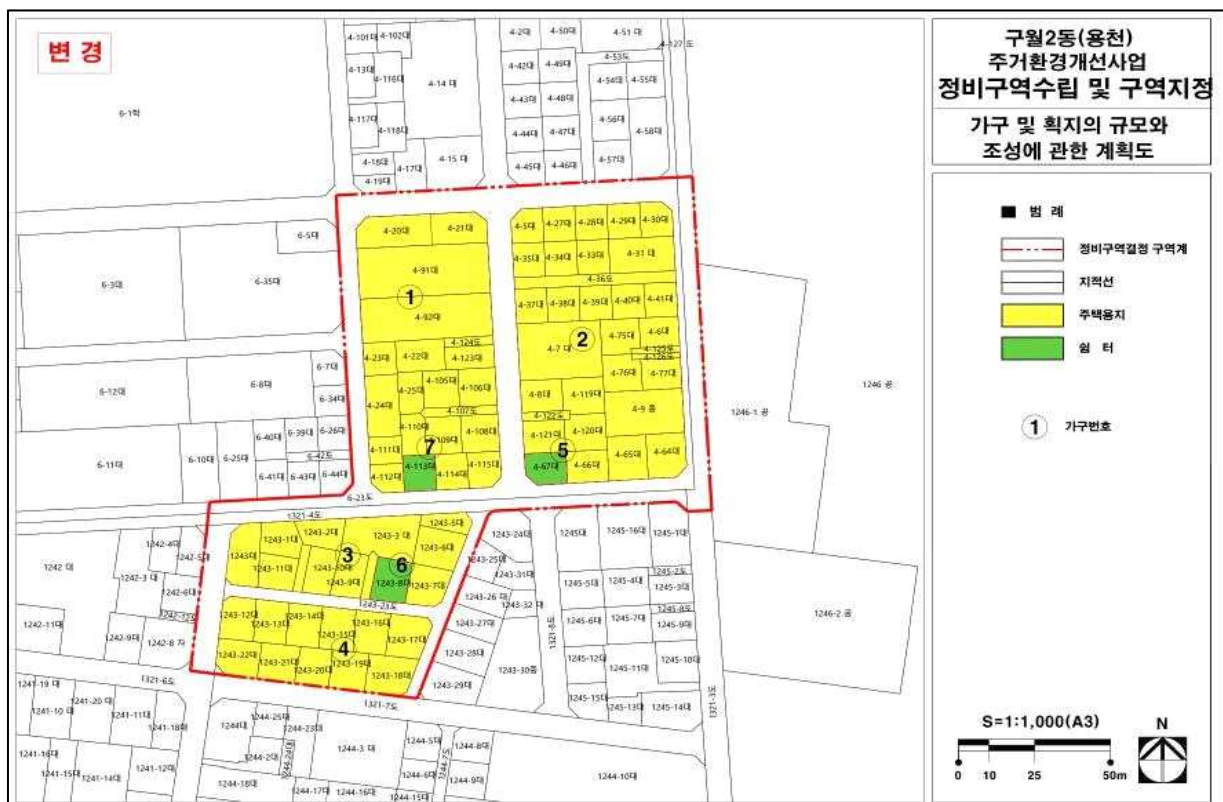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	1	남동구 구월2동 4-92번지 일원	4,048.0	단독주택 공동주택	60	250	
기정	-	2	남동구 구월2동 4-7번지 일원	4,723.0	단독주택 공동주택	60	250	
기정	-	3	남동구 구월2동 1243-3번지 일원	2,013.0	단독주택 공동주택	60	250	
기정	-	4	남동구 구월2동 1243-15번지 일원	1,655.0	단독주택 공동주택	60	250	
신설	-	5	남동구 구월2동 4-67번지	141.3	쉽터(1)	60	250	
신설	-	6	남동구 구월2동 4-113번지	130.9	쉽터(2)	60	250	
신설	-	7	남동구 구월2동 1243-8번지	169.7	쉽터(3)	60	250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도-기정]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도-변경]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유형	구분	역할
공공일자리 연계	공공시설물 관리	골목길 청소, 쉼터, 화단 조경 등 관리
중간지원조직 연계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남동구 일자리센터를 통한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모델 발굴
	구인구직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남동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 희망자 취업상담

1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 (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내 용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공동체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대표성 부여 - 주민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인 운영 유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 매월 또는 분기별 주민공동체회의를 통해 마을 내 소식 공유 - 주민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회의 및 참여안내 등의 내용 공유 - 주민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 마련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의제발굴-계획수립-운영관리프로그램 구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워크숍 등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 용천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역량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모색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실행 시 주민공동체 및 마을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

20.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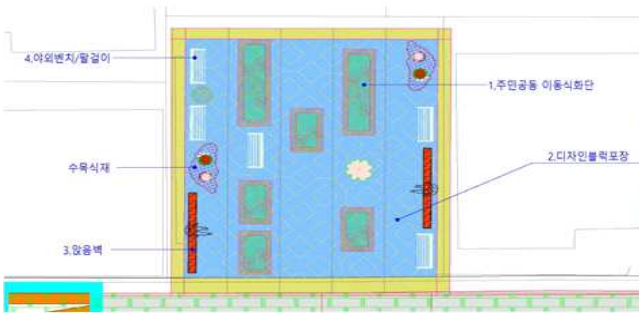
21. 쉼터 조성 계획

○ 쉼터1(문화마당)



○ 쉼터2(이음마당)

쉼터계획 (계획예시(안))



쉼터도입시설



쉼터도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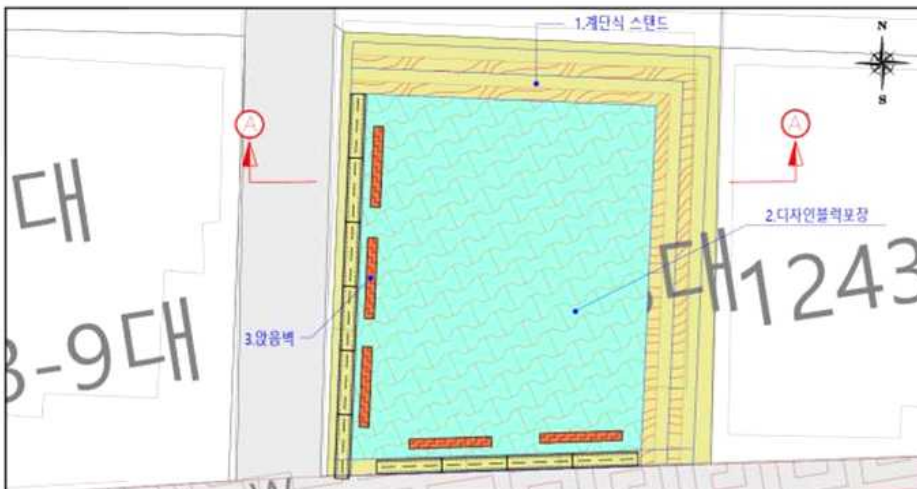


쉼터도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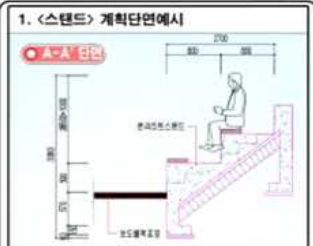


○ 쉼터3(골목마당)

쉼터 조성 (예시)



쉼터 스탠드 조성 예시



2. <디자인블럭포장> 예시사진



3. <앉음벽> 예시사진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11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월동 342-1번지 일원 “신세계아파트”는 1980년에 준공되어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서,
- 2023년 재건축 판정을 받은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토지등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함
- 입안권자(남동구)는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회 의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20. 6. : 현지조사(결과: 안전진단 필요)
- 2021.~ 2023. : 안전진단(결과: 재건축판정)
- 2025. 2. :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市 사전컨설팅 자문완료
- 2025. 5. : 정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
- 2025. 5.~12.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 보완
- 2025. 12. : 정비계획 반영 통보
- 2026. 1. :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 통보

□ 주요내용

○ 정비구역 범위

- 종전 아파트 부지와 개발 잔여지인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구역 설정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일원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완화 계획

- 계 획 : 법적상한용적률인 300% 이하로 계획
- 완화조건 :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건설
- 절 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 교통 및 동선처리

- 이면도로에 차량 진·출입구 2개소 설치
- 진입도로 확폭 및 완화차로 확보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세대수 : 928세대(분양 900세대, 임대 28세대)
- 증 가 율 : 기존 700세대에서 재건축으로 약 32% 증가
- 규 모 : 지하2층/지상42층

□ 향후 일정계획

- 2026. 1. 15. :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2. : 주민의견 채택 및 의회의견청취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2026. 3. :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 2026.상반기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참고사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첨부]

■ 첨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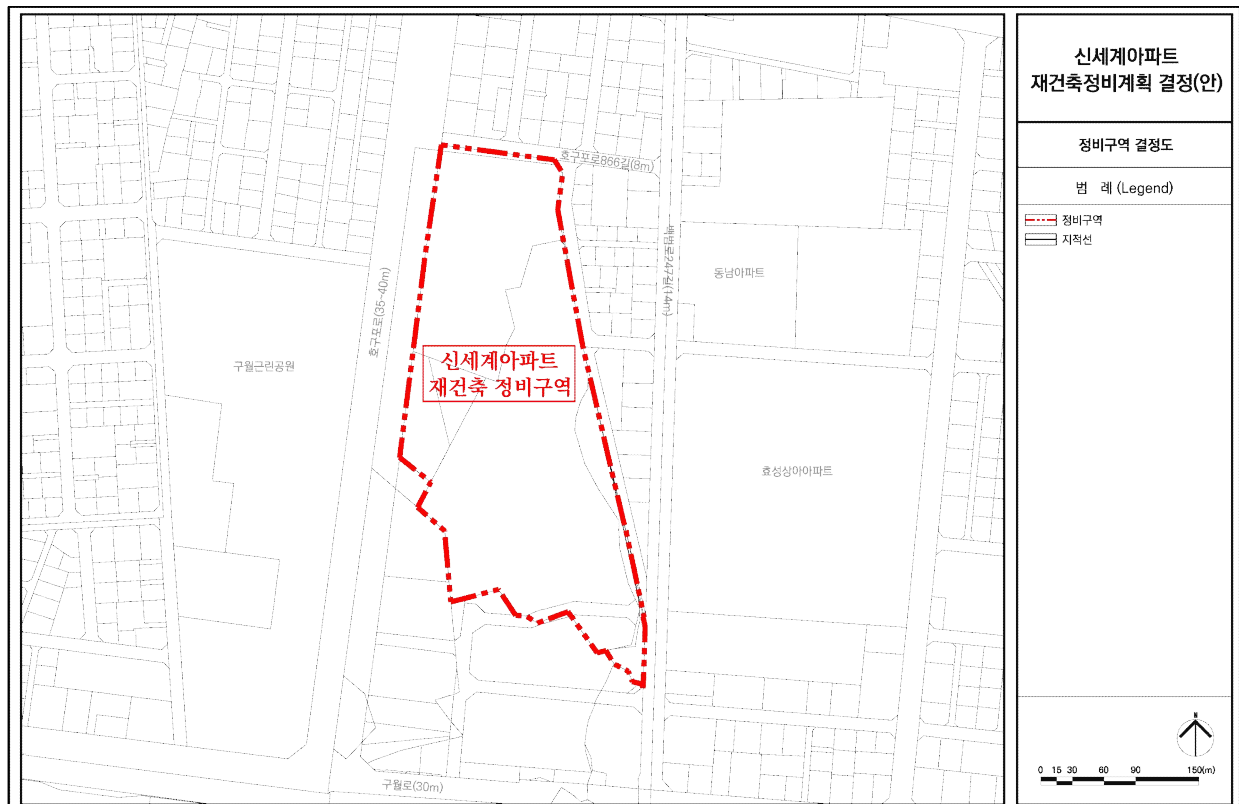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 정 구 분	사 업 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재건축정비사업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구월동 342-1번지 일대	-	증) 32,188.8	32,188.8	

나. 지정 사유

구분	위치	면적(㎡)	지정사유
신설	구월동 342-1번지 일대	32,188.8	- 신세계아파트 단지는 1980년에 준공되어 44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 - 거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정비구역 결정도]



2.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서

가.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제3종일반주거지 역, 준주거지역		-		-	-		-	-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면적 (㎡)		32,188.8	29,503.0	2,685.8		1,772.8		913.0			
	필지수		13	5	8		4		4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11	6	5	7	5	2	4	1	3	
	호수		85	80	5	52	50	2	33	30	3	
거주자 및 관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계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계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700	506	194	1,254	830	424	712	3	709	-		

4)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2이상 판정을 받은 지역 : 정비구역 지정 시 입안대상지역(면적 32,188.8㎡)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결과 : 재건축 판정 ('23.2.24.)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준비사업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

범례 (Legend)

- 정비구역
- 지적선
- 노후·불량 건축물
- 양호 건축물

구도심(30~40m)

구도심(30m)

종남아파트

호성상아파트

0 15 30 60 90 150(m)

다. 현황전경사진



3.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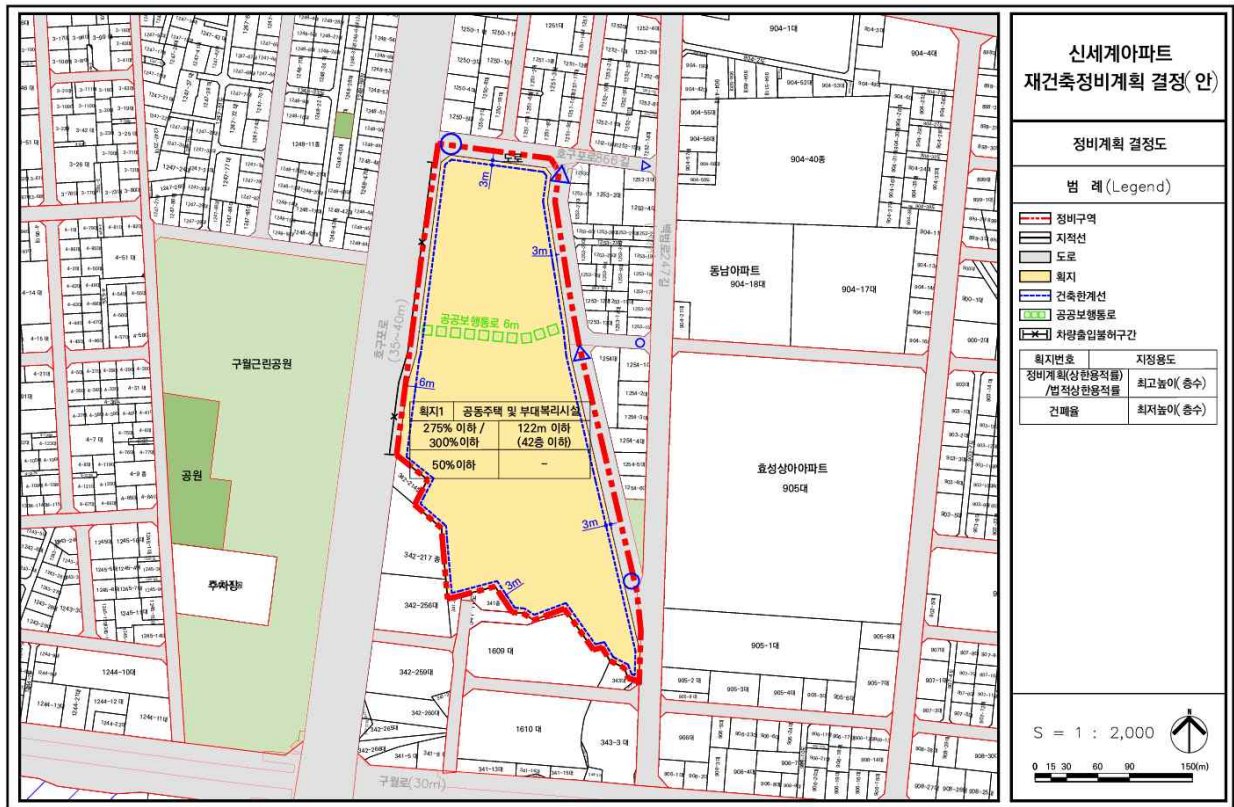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32,188.8	1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2,916.1	9.06	
획지	공동주택	29,272.7	90.94	

[토지이용계획도]



[정비계획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188.8	-	32,188.8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0,857.8	증) 1,331.0	32,188.8	100.0
	준주거지역	1,331.0	감) 1,33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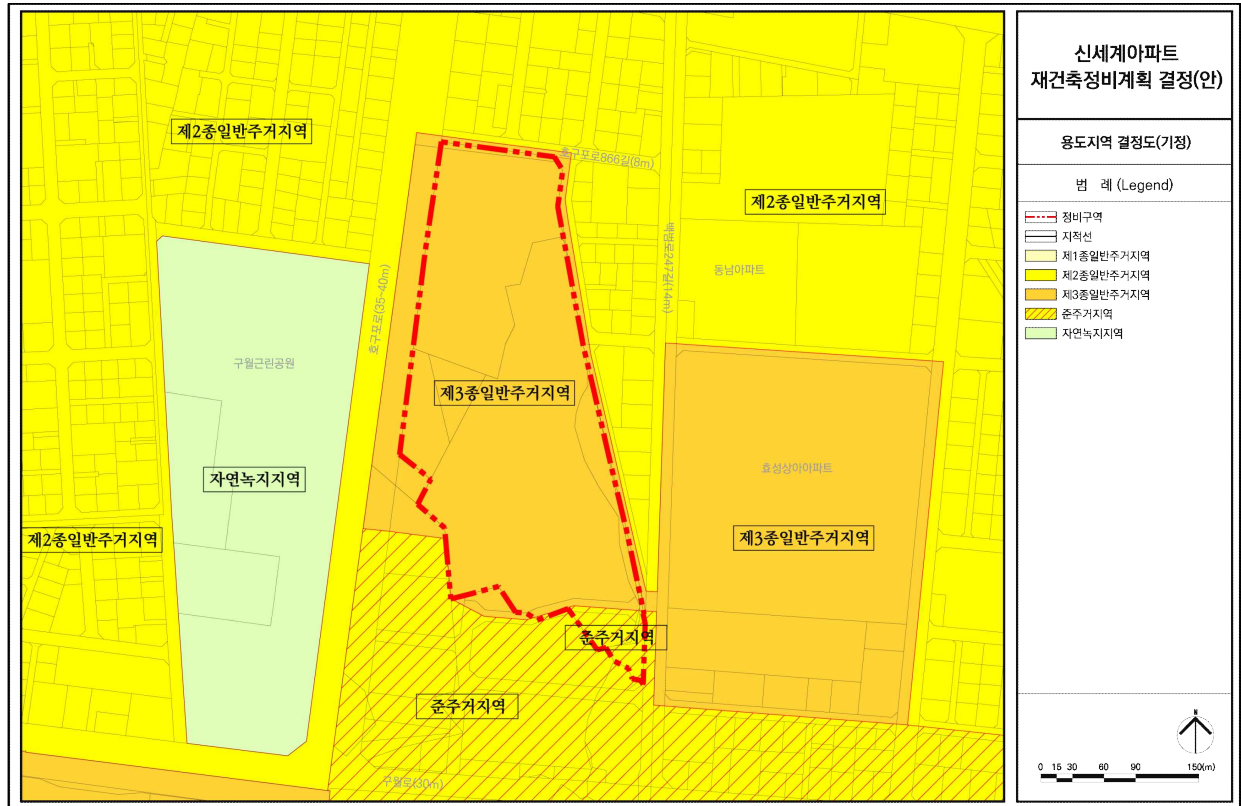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남동구 구월동 342-75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331.0	• 공동주택단지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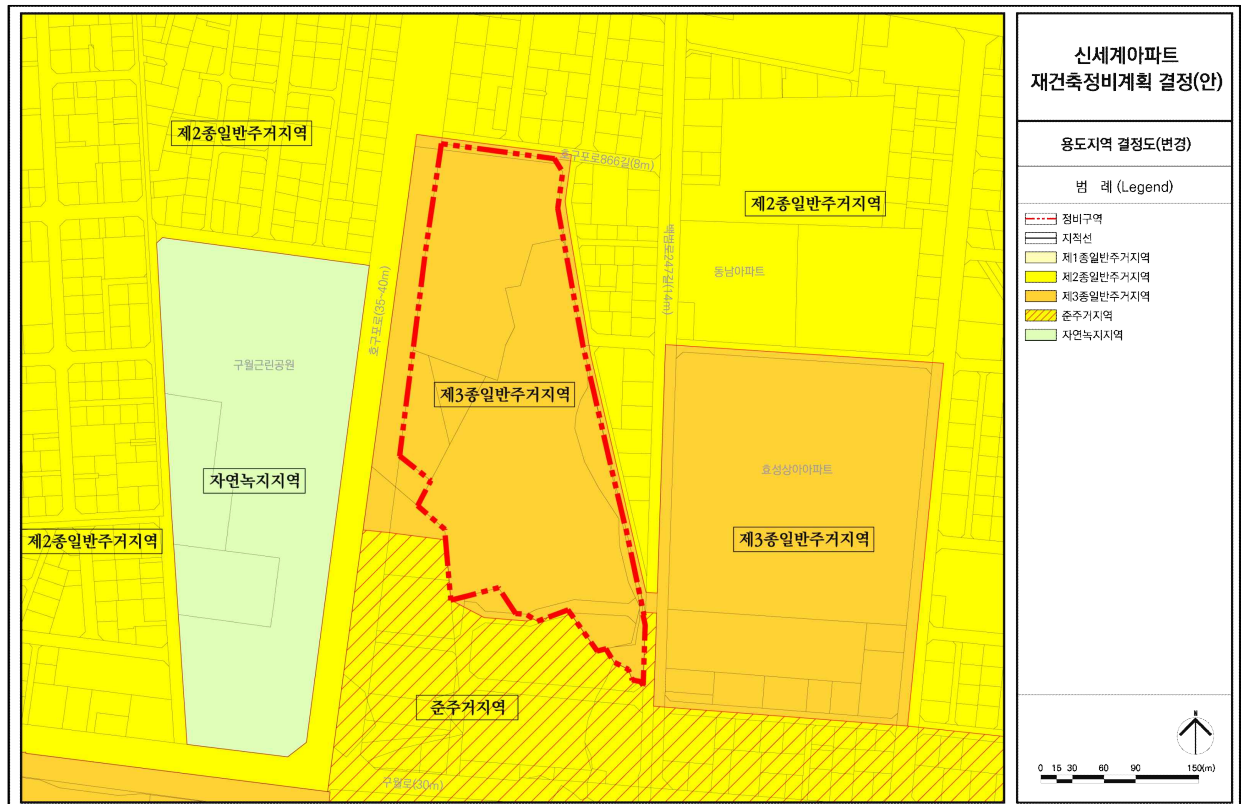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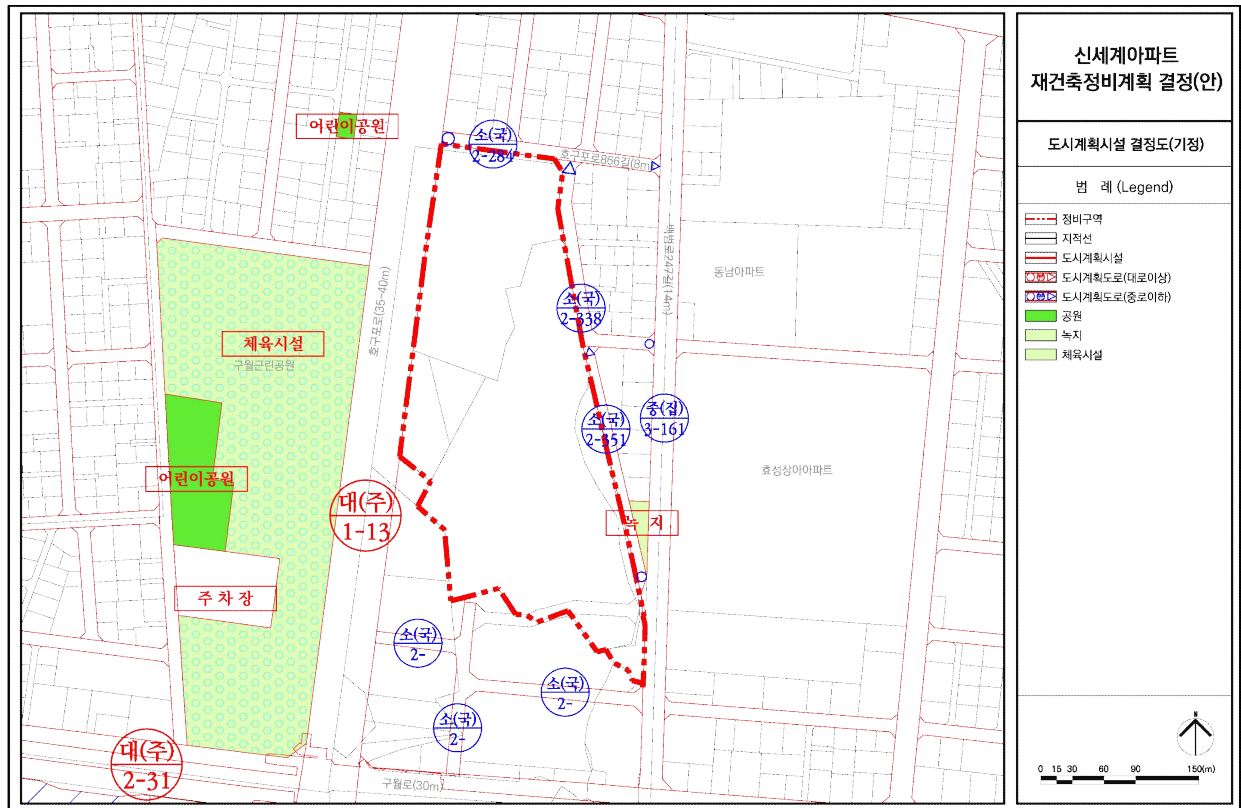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3	35 (35~40)	주간선 도로	17,920	계산동 1072	고잔동 801-1	일반 도로	-	-	-
변경	대로	1	13	35 (35~40) [3]	주간선 도로	17,920 (194)	계산동 1072	고잔동 801-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84	8	국지 도로	138	구월동 1250-1 4	구월동 1322-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A	14 (8~14) [6]	국지 도로	138 (72)	구월동 1250-1 4	구월동 132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338	8	국지 도로	153	구월동 1322-5	구월동 1322-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B	12.5 (8~12.5) [4.5]	국지 도로	153 (112)	구월동 1322-5	구월동 1322-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351	6	국지 도로	165	구월동 1322-6	구월동 1322-5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3	C	12.5 [6.5]	국지 도로	180	구월동 1071	구월동 1322-5	일반 도로	-	-	-

※ () 변화폭원, [] 구역 내 폭원 및 연장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3	대로1-13	• 도로폭원 변경 - B=35~40m (대상지 내 일부 3m)	• 간선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 확폭 (구역 연결구간 폭원 변경 : 35m → 35~38m)
소로2-284	중로3-A	• 도로폭원 변경 - B=8m → 8~14m (대상지 내 6m)	• 대상지 주출입구가 위치한 도로로, 개발 후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2-338	중로3-B	• 도로폭원 변경 - B=8m → 8~12.5m • (대상지 내 4.5m)	• 대상지 주출입구가 위치한 도로로, 개발 후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2-351	중로3-C	• 도로폭원 변경 - B=6m → 12.5m (대상지 내 6.5m)	• 대상지 주출입구가 위치한 도로로, 개발 후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법 정		계획면적(㎡)	비 고
			기 준	면적(㎡)		
주 민 공 동 시 설	소 계	획지	900세대 이상 500+(928세대×2.0)	2,380.0㎡ 이상	2,356.00㎡	-
	경로당	〃	500~1,000세대 미만	144.0㎡ 이상	195.51㎡	지상
	어린이집	〃		80.0인	420.80㎡	지상
	작은도서관	〃		100.0㎡ 이상	125.00㎡	지상
	주민운동시설	〃	-	524.0㎡ 이상	550.20㎡	옥외
	어린이놀이터	〃	-	1,158.0㎡ 이상	1,210.76㎡	옥외
근린생활시설		〃	-	-	750.00㎡	지하
경비실		〃	-	-	12.00㎡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10㎡+(928세대-50세대)×0.05㎡	53.90㎡ 이상	160.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준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32,188.8	획지	29,272.7	구월동 342-1번지 일대	11	-	-	11	-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신세계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 역	32,188.8	획지	29,272.7	구월동 342-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5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275 이하	300 이하	122 이하 (최고 42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총 928세대 • 건설비율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건설비율」 제5조제1항에 따름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 계획 100% <table><tr><th rowspan="2">건립규모 (전용면적)</th><th colspan="3">세대수(세대)</th><th rowspan="2">비율(%)</th><th rowspan="2">비고</th></tr><tr><th>소계</th><th>분양</th><th>임대</th></tr><tr><td>총 계</td><td>928</td><td>900</td><td>28</td><td>100.0</td><td>-</td></tr><tr><td>59㎡이하</td><td>464</td><td>436</td><td>28</td><td>50.0</td><td>-</td></tr><tr><td>59㎡초과~85㎡이하</td><td>464</td><td>464</td><td>-</td><td>50.0</td><td>-</td></tr><tr><td>85㎡초과</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건립규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소계	분양	임대	총 계	928	900	28	100.0	-	59㎡이하	464	436	28	50.0	-	59㎡초과~85㎡이하	464	464	-	50.0	-	85㎡초과	-	-	-	-	-
건립규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소계	분양	임대																																										
총 계	928	900	28	100.0	-																																								
59㎡이하	464	436	28	50.0	-																																								
59㎡초과~85㎡이하	464	464	-	50.0	-																																								
85㎡초과	-	-	-	-	-																																								
심의완화 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완화용적률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로1-13 도로변 6m, 가감차로변 3m 지정 - 그 외 획지 경계로부터 3m (※건축한계선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 통로		• 동·서간 폭원6m (위치는 결정도에 따름)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허용용적률 계획

구분	인센티브량 기준		적용	비고
자원절약· 자연친화적 주택건설	-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1+ 등급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0%	10%
	- 제로에너지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 5 등급		6%	6%
주택성능 개선	- 지능형 건축물 - 지능형건축물 인증 4 등급		4%	4%
합 계	최대 20%p 이내		20% 적용	

■ 정비계획(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 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공주택용지)	정비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비계획 수립 전 도시계획시설 면적
	32,188.8㎡	29,272.7㎡	2,916.1㎡	-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정비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 정비계획 수립 전 도시계획시설 면적 = 2,916.1㎡ - 0㎡ = 2,916.1㎡ ※ 정비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 도로 2,916.1㎡ ※ 대상지 내 국·공유지 2,684.3㎡ (비도시계획시설)			
기준용적률	230%이하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30% + 20% = 250%이하 ※ β =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0%)+제로에너지건축물(6%)+지능형건축물(4%)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 제공) = 허용용적률 + [1.5×(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기준용적률] = 250% + [1.5×(2,916.1㎡/29,272.7㎡)×230%] = 284.36% ⇒ 정비계획 용적률: 275%이하 (※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최대한도 적용)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 제공 시 대상시설: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하천 등 공공시설 -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등 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사.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위치	면적(㎡)		
신설	1	29,272.7	구월동 342-1번지 일대	29,272.7	-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기개발지 및 역세권 입지여건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Sky-line 형성 -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색채 및 형태의 경관조성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 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항목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획지1	• 대로변 : 대로1-13 도로변 6m, 가변차로변 3m 지정 • 그 외 대지경계로부터 3m	도면참조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 내 유치원 2개소 (아삼유치원, 북자유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 후 반영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카.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밀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11	7	4	11	6	5

나) 거주 현황

유형별 주택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700	506	194	1,254	830	424	
공동 주택	호	700	506	194	1,254	830	424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700	-	-	-	-	700	700	-	-	-
60㎡이하	소계	-	-	-	-	-	-	-	-	-	-
	30㎡이하	-	-	-	-	-	-	-	-	-	-
	30㎡초과 ~ 50㎡이하	-	-	-	-	-	-	-	-	-	-
	50㎡초과 ~ 60㎡이하	-	-	-	-	-	-	-	-	-	-
60㎡초과 ~ 85㎡이하		220	-	-	-	-	220	220	-	-	-
85㎡초과	소계	480	-	-	-	-	480	480	-	-	-
	85㎡초과 ~ 135㎡이하	480	-	-	-	-	480	480	-	-	-
	135㎡초과	-	-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일반분양 (조합원등)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	비고
합 계		928	900	28	-
60㎡ 이하	소 계	464	436	28	-
	30㎡ 이하	-	-	-	-
	30㎡~50㎡ 이하	-	-	-	-
	50㎡~60㎡ 이하	464	436	28	-
60㎡~85㎡ 이하		464	464	-	-
85㎡ 초과	소 계	-	-	-	-
	85㎡~135㎡ 이하	-	-	-	-
	135㎡ 초과	-	-	-	-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300% 이하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용적률)		• 27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300% - 275% = 25%				
	의무용적률 (증가된 용적률의 30%)	• 용적률 25% × 30% = 7.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 의거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100분의 30 확보)				
	의무 연면적	• 29,272.7㎡(대지면적) × 7.5% = 2,195.45㎡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 수	연면적	비고
		전용 면적	공급 면적			
		59.97㎡	79.92㎡	28	2,237.94㎡	(의무) 2,195.45㎡ 이상 확보

파.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설계 적용

-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감시 강화	출입 구	• 단지 출입구는 도로나 통행 인근 등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위치 • 주동 출입구 주변은 주변보다 밝으며 동작감지가 가능한 조명 설치	
	조경	• 단지 내 보도에 가까울수록 수고 1m이하의 작은 수목, 보도에서 멀어질수록 큰 수목 식재	
	조명	•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출입구에 이르는 진입로,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 보행로의 조명은 최소 5룩스 이상, 주동 진입로의 조명은 최소 15룩스 이상으로 설치	
	경비 실	• 경비실은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며, 조경·시설물 등으로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배치	
	지상 공간	• 공적 공간은 단지 내 다양한 방향 및 위치에서 시각적 접근이 가능토록 공간을 구분	
	지하 공간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기둥, 벽면으로 인해 차폐되지 않도록 배치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인지하기 쉽고, 주변 시설물 및 조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	
	단지 경계 부	• 방향 전환이 필요한 보행로의 분기지점에 안전거울을 설치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차로에 접하여 설치	
접근 통제	출입 구	• 출입구에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동 출입구 주변에는 세대 침입경로나 도구가 될 수 있는 공간·시설물이 없도록 배치	
	조경	• 주동에 인접한 수목이 세대로 침입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이격 • 교목은 지하고 2m이상을 확보하고, 관목은 수고 0.75~1m 정도로 유지되는 수종 식재	
	관리 시설	• 전기·가스미터기는 위장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각 호의 외부공간에 설치 • 배관설비, 우편함 택배보관함 등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	
	방법 시설	• 접근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등의 시설을 설치 • 옥상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은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토록 운영 • 저층부 침입 방지를 위한 방법창 등의 방법시설을 설치	
	지상 공간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활동공간은 외부인 접근통제와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함 • 휴게 및 운동공간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며, 주변 CCTV의 가시범위를 고려	
	지하 공간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이동경로(EV홀 출입구 포함), 주차구역에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신설	획지1	1	29,272.7	구월동 342-1번지 일대	29,272.7	공동주택

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지정(변경) 후 4년이내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예정)	현황) 700세대 증) 228세대 계획) 928세대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① 추정비례율 산정

$$\text{추정비례율} = \frac{\text{분양수입} - \text{지출}}{\text{종전자산평가액}} \times 100$$

(513,844,394천원) (361,442,842천원)
(151,530,466천원)

추정비례율
약 100.5%

②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추정분담금 추산액

(단위 : 원)

구분 (전용)	종전자산 추정가격	권리가액 (추정비례율 100.5%)	타입 (분양가)	계산식	추정분담금
65㎡	159,647,400	160,445,637	59 타입 (461,914,475)	461,914,475 - 160,445,637	301,468,838
			84 타입 (645,247,625)	645,247,625 - 160,445,637	484,801,988
73㎡	178,136,200	179,026,881	59 타입 (461,914,475)	461,914,475 - 179,026,881	282,887,594
			84 타입 (645,247,625)	645,247,625 - 179,026,881	466,220,744
85㎡	206,764,800	207,798,624	59 타입 (461,914,475)	461,914,475 - 207,798,624	254,115,851
			84 타입 (645,247,625)	645,247,625 - 207,798,624	437,449,001
88㎡	214,605,600	215,678,628	59 타입 (461,914,475)	461,914,475 - 215,678,628	246,235,847
			84 타입 (645,247,625)	645,247,625 - 215,678,628	429,568,997
103㎡	250,712,000	251,965,560	59 타입 (461,914,475)	461,914,475 - 251,965,560	209,948,915
			84 타입 (645,247,625)	645,247,625 - 251,965,560	393,282,065

더.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사업지는 기존 주거지로서 수목보존, 이식, 재활용등의 관상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없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현황수목조사등을 통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의 경우 수목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의안 번호	3212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2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연차별 이행력을 확보하고,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 제8기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 제8기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활동

☐ 본 문 : “별첨”

☐ 참고 자료

- 「지역보건법」 제7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 혜 경

[참고자료]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
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
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
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